



1995년도

축산발전사업계획 및 실시요령 (양계)

—농림수산부—

닭 경쟁력 제고사업(자율)

1. 목적

양계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사육규모의 전업화, 시설의 자동화 등을 위하여 농가가 필요로하는 사업자금을 종합지원

2. 전업농 육성목표

○ 목표 : $\frac{('95)200}{(누계) (1,200)} \rightarrow \frac{('96\sim'98)600}{(1,800)} \rightarrow \frac{('92\sim 2004)300호}{(2,100)}$

* ()누계는 '94년까지 기록성된 전업농을 포함한 농가수임

3. 사업신청자격

가. 사업대상자

- 닭사육농가 또는 종계장, 부화장 경영자
- 영농조합법인, 축협, 자생적인 협업체 등

나. 대상자 구비조건

〈전업농, 종계업〉

- 3년 이상 양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
- 종계장, 부화업은 시·도지사에 종계업, 부화업등록되어 있고 분양실적이 있는 자

〈축협·법인, 협업체 등〉

- 축협, 영농조합법인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등기를 한 법인
- 양계사업을 목적으로 5인이상 농가가 정관을 정하여 운영하는 협업체

다. 대상자선정 우선 순위

<전업능, 종계업>

- 종계업, 부화업, 닭계열화사업 계약농가
- 자금지원후 2년이내에 3만수 이상을 가족 노동력으로 사육할 수 있는 기술과 재력이 있는 자
- 농과계 졸업자 또는 농민후계자로서 3년 이상 양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
- 농가 현장교육 등 시범농장으로 활용하는 등 선도양축을 할 수 있는 자
- 전산관리 등 경영의 현대화로 생산성을 기할 수 있는 자
- 도지사가 시범농가육성 교육장화하고자하는 대상자

<조합·법인·협업체>

- 공동구매, 공동출하, 공동방역 등 조직의 응집력이 큰 조직
- 공해문제 등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적은 지역에 양돈업을 하고자하는 조직
- 기술수준이 높고 경영관리의 현대화를 도모하는 조직
- ※ 조합, 법인, 협업체 등의 구성 농가는 개별농가에 우선하여 대상자로 선정

4.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

가. 사업시행주체 : 시장·군수

나.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'95.1~12(1년간)
- 지원금액
 - 농가호당 2억원, 법인은 자기자본의 200%, 축협, 공공기관은 400%이내. 단, 종계장, 부화장시설은 사업규모, 생산능력 등을 감안하여 한도이상 증액지원 가능
- 지원내용
 - 기반시설, 축사시설, 급이·급수시설, 환경개선시설, 각종 기계기구 등 종합지원(부지

구입 및 가축구입비 등 경영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)

-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별도의 축산공해방지 시설 사업으로 지원

다. 사업비 : 49,642백만원 (융자)

◦ 도별 사업비

(단위 : 백만원)

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	계
8,936	3,326	3,822	6,900	4,567	6,007	8,936	6,255	893	49,642

라. 지원조건

- 재 원 : 축산발전기금
- 지원조건 : 3년거치 7년 균분상환(금리 5%)
- 지원비율 : 융자 70%이내, 자담 30% 이상(세부사업별 지원비율 : 별첨 참조)
- * 단, 관리용 기구·장비 구입비는 2년거치 3년균분 상환

5. 보고

보고 사항	보고기관	보고일	서식
◦ 닭 경쟁력제고사업 계획(확정)	도	'95. 3.31한	별첨
◦ 닭 경쟁력제고사업 실적	도	'96. 1.20	"

6. 기타 참고 사항

- 사업안내 기관
 - 중앙 :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(전화 02-500-2674, 503-7282)
 - 도 : 농정국 축산과, 축협중앙회 도지회
 - 시·군 : 산업(축산)과, 농촌지도소, 축협(양계)조합

축산단지조성사업(자율)

아니한 지역으로 부지를 기 확보한 단지)

○기반시설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한 지역

1. 목적

가축사육시설을 단지화 하므로써 기자재의 구매, 생산물의 판매, 방역 및 분뇨처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임

2. 육성목표

○('94현재) 73→(2004) 210개소

3. 사업신청 자격

가. 대상축종 및 사업대상자

○대상축종 : 한우, 젓소, 돼지, 닭

○대상부지를 자체에서 확보하고 기존의 축산업을 이전하기 위한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

○기 조성된 단지중 사업보완을 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단지

○기존의 가축사육지역을 단지화하고자 하는 지역

나. 대상자 구비조건

○가족노동력을 이용하여 축산농가로 단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

○한우, 젓소는 3호 이상, 돼지, 닭은 5호 이상의 전업양축농가가 참여할 것

○단지 참여농가는 과거 5년간 동일 축종을 전업규모 이상으로 사육한 경험자일 것

○축종별로 사육입지 조건이 좋은단지(한우, 젓소는 사육장 및 조사료생산기반 규모가 크고 용수개발 등의 경비가 적게 소요되고 양돈, 양계의 경우에는 분뇨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

4. 내용 및 지원조건

가. 사업주체 : 시장·군수

나. 사업내용

○사업기간 : '95. 1~'96.12(2년)

○지원규모

-1인당 3억원이내, 법인은 자본금의 200%, 축협 등 공공기관은 자기자본의 400% 한도내

○사업비 : 64,934백만원('94계속사업, '95신규사업, 기존사업보완 포함)

○도별 배정내역(잠정)

(단위 : 백만원)

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	계
12,993	5,815	2,801	5,682	7,346	5,101	8,825	5,353	11,018	64,934

라. 지원조건

○지원내용

-기반시설(진입도로, 목도, 용수원, 전기시설) : 보조 90%, 자부담 10%

-사료생산기계 : 보조 50(지방비 20, 축발기금 30), 용자 40, 자부담 10%

-축사 등 부대시설 : 용자 70%, 자부담 30%(별첨 지원기준 참조)

○지원조건 : 3년거치 7년균분상환, 연리 5%

* 단, 조사료생산장비, 기타 기구·장비 구입비는 2년거치 3년균분 상환

마. 사업추진상 유의할 사항

○축산단지조성 부지는 타법상 제한사유가 없는 지역으로서 자체자금으로 사전 확보하여

야 함

◦ 축산단지조성은 자금능력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과도한 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참여농가수, 시설투자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기관에 검토의뢰하여 작성한다.

◦ 참여농가는 기존양축가중 전업규모로서 재력이 충분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단지조성 후 기존시설은 폐지하고 이전하여야 함

◦ 기반시설은(진입로, 전기인입, 용수개발) 일정비율의 지방비를 부담

◦ 축사 등 사육시설은 값비싼 수입품등의 과잉투자를 억제하고 사육규모에 적합한 시설의 자동화로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

◦ 분뇨처리시설은 지원한도(1인당 3억원)에 제한없이 축산공해방지시설 사업으로 실제 소요되는 자금을 별도 지원

◦ 사업계획 수립시 항목별 소요자금은 공사비의 산출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거 수립·시행하고 사업시행시에는 사업설계를 하여 추진할 것

바. 대상자 확정

◦ 농림수산부는 도지사가 제출한 대상지구에 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사업비 확정

5. 보고

보고 사항	보고기관	보고 일	서식
◦ 축산단지 조성사업 계획(확정)	도	'95. 3.31한	별첨
◦ 축산단지 조성사업 실적	도	'97. 1.20	"

6. 기타 참고 사항

◦ 사업안내 기관

— 중앙 :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(전화 02-500-2674, 503-7282)

—도 : 농정국 축산과, 축협중앙회 도지회

—시·군 : 산업(축산)과, 축협조합

가축계열화사업(공공계획)

1. 목적

전문경영주체 중심의 생산·가공·유통의 통합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일정소득을 보장 생산에만 전념하여 생산비절감과 안정적인 축산 경영 도모

2. 육성목표

◦ ('94현재) 25개소→(2004) 53개소

3. 사업신청 자격

가. 대상축종 : 한우, 돼지, 닭

나. 사업대상자

◦ 도축, 부화, 사료제조업, 종축업 등 축산관련 사업을 하는자로서 신규로 가축계열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 및 생산자단체

◦ 기존 계열화사업체중 닭고기 정육을 수출하기 위한 사육환경개선을 하고자 하거나 기타 시설의 보완을 하고자 하는 업체

다. 대상자 구비조건

◦ 계열주체는 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축산관련 시설을 자체 확보하거나 임차계약 또는 계열화에 참여시켜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

◦ 자부담에 능력이 있고 융자금에 대한 담보능력이 있는 자

- 계약생산된 축산물의 가공, 유통능력이 있는 자
- 계열농가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능력이 있는 자
-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 등

4.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

가. 사업시행주체 : 도지사

나.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'95. 1~'96.12(2개년간)
- 지원규모
- 사업계획에서 의거 예산액 범위내에서 지원
- 시설비의 70%이내 용자(2개년간 분할 지원)

다. 사업비 : 20,200백만원(용자)

- 도별 사업비(1년차 지원분, 잠정)

(단위 : 백만원)

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	유보	계
1,441	-	350	1,290	2,354	4,515	3,500	-	1,750	5,000	20,200

라. 지원조건

- 재 원 : 축산발전기금
- 지원조건 : 3년거치 7년균분상환(년리 8%)
- 지원비율 : 용자 70%이내 자담 30% 이상

5. 사업대상자 선정절차

가. 대상자 선정방법

- 사업희망자는 불임의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·군수를 경유 도지사에 신청
- 도지사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검토의

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 제출

- 농림수산부는 사업계획에 의한 소요자금에 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사업비 확정

나. 사업추진상 유의사항

- 사업승인후 5년이내에 한우는 3천두 이상, 돼지 3만두 이상, 닭 100만수 이상 규모로 각각 계열 조직화 함
- 계열화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자재는 계열주체가 확보하거나 기존시설을 임대 또는 계열조직화하여 사용
 - 기반시설 : 도축장, 종축생산시설, 가공시설, 판매시설 등
 - 자 재 : 사료, 어린가축(병아리, 자돈, 송아지), 약품 등
- 한우계열화를 위한 비육용 밀소 확보 방안 강구
 - 번식농가(조합, 축산단지, 자생조직 등)와 계약생산하는 방법
 - 비육농가와 직접 계약하여 송아지공급을 생략하는 방안
 - 시중에서 구입하여 위탁 또는 계약사육하는 방안 등을 강구

6. 보고

- 도지사는 사업추진 계획을 별첨양식에 의거 보고
 - 신규계열화 지원업체 사업추진 상황 : 별첨 1서식
 - 보고일 '94사업 : '95. 7.10, '95.12.10 (완료시)
 - '95사업 : '95.12.10, '96. 7.10, '96.12.10(완료시)
 - 계열사업추진(기존+신규) : 별첨 2서식
 - 보고일 '95상반기 실적 : '95. 7.20까지
 - '95하반기 실적 : '96. 1.20까지

7. 기타 참고 사항

- 사업안내 기관
- 중앙 :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 (전화 02-500-2674, 503-7282)
- 도 : 농정국 축산과, 축협중앙회 도지회
- 시·군 : 산업(축산)과, 축협조합

축산물내 유해잔류물질 검사사업(공공계획)

1. 목적

- 국내산 축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축산업발전 및 공중보건향상 도모
-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 정착으로 양축농가 소득보호
- 잔류원인 분석을 통한 유해잔류물질 방지 대책 강구·추진
- 국내산 육류에 대한 신뢰도 및 품질경쟁력 제고로 축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

2. 추진방향

- 축산물내 항균제·합성항균제, 농약 등 유해잔류물질 검사강화
- 동 검사결과 잔류물질 검출시 잔류방지 제도 및 규제강화 병행 등 특별관리 실시
- 유해잔류물질 검사실시 재료비 및 검사장비 등 검사기반 구축 지원

3. 사업내용

- 실시기관 : 시·도 가축위생시험소(서울시, 직할시는 보건환경연구원, 제주도는 축산진흥원)
- 사업기간 : '95. 1~12월
- 사업량 : 45,000건

소	돼지	닭	계
11,000건	23,000	11,000	45,000

- 검사대상
 - 대상품목 :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
 - 대상물질 :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(설과제), 농약 등 유해잔류물질
- 검사방법
 - 축산물작업장에서 채취된 수축의 근육시료에 대해 유해물질 잔류여부 판정(스크리닝 검사: EEC 4-plate method 적용실시) 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(보건사회부 고시)중 "식육중 잔류물질 허용기준 및 축산식품중 잔류물질 시험법"에 의거 정량분석 등 검사실시
 - 농약의 검사방법은 보건사회부에서 제정되는대로 추후통보 예정임
- 검사결과 조치
 - 검사결과 유해잔류물질 검출시 해당가축 출하농장에 대한 잔류물질 제도 및 규제검사 강화 등 특별관리, 허용기준 초과육에 대한 폐기처분 등 제재조치
 - 유해물질 잔류여부 검사(1차검사)결과 잔류(양성)판정시 : 해당가축 출하농장 추적에 의한 특별관리 실시 → 가축 사양관리 실태점검 등 잔류원인 분석을 통한 농가제도 및 가축 재출하시 2차검사(규제검사) 실시
 - 2차검사 : 특별관리 대상농장의 재출하 가축에 대한 규제검사 실시(검사완료시까지 출고보류 등 유통 제한)
 - 잔류검사 결과를 분석, 유해잔류물질 방지 대책 강구·추진
- 사업비

사업명	사업량	사업비			비고
		국비 보조	지방비 보조	계	
유해잔류물질검사 - 검사재료비	건 45,000	천원 40,500 (47%)	천원 45,000 (53%)	천원 85,500 (100%)	국비예산중 축산물내 잔류물질 검사 기술교육 실시예산 3,000천원 포함

4. 세부실시요령

내 용	주관(협조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해잔류물질검사 세부계획 수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축위생시험소의 검사능력 및 월별, 축종별 도축두수 등을 감안 실시계획 수립(별지 시·도별 사업량 참조) - 시·도지사는 세부계획 수립 후 '95. 1.25일까지 당부에 보고 ○ 축산물내 유해잔류물질검사 기술 교육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·도 가축위생시험소 본소 잔류물질검사 요원의 HPLC 및 GC 등 정밀검사장비 운용 및 관리 요령 등에 관한 기술 교육계획 수립 - 수의과학연구소장은 세부계획 수립후 '95. 2.30일까지 당부에 보고 ○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잔류물질검사장비(HPLC) 정밀도 확인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목적 :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 배치된 잔류물질검사장비(HPLC)의 정밀도 확인검사 실시로 첨단검사장비 운영관리 적정 및 검사요원의 자질향상 도모 - 확인주관기관 : 수의과학연구소 - 실시방법 및 회수 : Blind Test - 확인결과 조치 : 분석방법 지도 및 관리강화 ○ HPLC 등 첨단기기의 사용확대로 기술숙련 등 장비활용 극대화 방안 강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EEC4 plate 검사결과에 따른 정밀검사와외에 돈육에 대한 설파메 타진 잔류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HPLC 등 직접 활용검사(월20건 이상) 체제로 전환하여 검사결과를 매월 당부에 보고하고 검사결과 양성판정시 특별관리 	<p>시·도 (가축위생시험소)</p> <p>수의과학연구소 (가축위생시험소)</p> <p>수의과학연구소 가축위생시험소</p> <p>가축위생시험소</p>

내 용	주관(협조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[잔류물질검사실시(검사체제도 참조)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검사시료 채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료채취장소 : 축산물작업장(도축장 및 도계장) · 시료채취물량 : 검사에 필요한 최소물량(근육 100g이상, 정량분석검사에 필요한 사료량 포함) · 시료채취방법 : 1농장 1시료(닭의 경우 1수 이상) 무작위 채취 ※ 시료채취시 시료 고유번호 부여, 출하농장 주소 및 성명, 축종, 성별, 연령, 채취장소, 도축검사 신청인 등 기재 : 잔류검사대장 작성 ·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검사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차검사 : 스크리닝 검사 실시 · 2차검사 : 스크리닝 검사 및 정량분석 검사 실시 → 스크리닝검사결과 유해물질 잔류추정(양성판정) 시료에 대해 정량분석 실시 - 항생물질 잔류추정 시료 : 수의과학연구소에 분석 의뢰(해당시료 및 스크리닝 검사성적 등 동봉·송부요) - 항성항균제(설파제) : 수의과학연구소에서 HPLC 등 검사장비에 의한 정량분석 - 농약 : 수의과학연구소에서 GC 등 검사장비에 의한 정량분석(검사결과 조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차 검사결과 유해잔류물질 검출(양성판정)시료 발생시 시·도지사에게 즉시 보고(축종, 농장소재지, 축주명 등) - 시·도지사는 특별관리 대상 농장 내역, 특별관리 대상 농장에 대한 검사강화 결과 등을 타 시·도지사에게 신속히 통보조치 - 특별관리 대상농장에 대한 내역 등이 통보된 경우 당해 농장에 	<p>가축위생시험소 (수의과학연구소)</p> <p>가축위생시험소 수의과학연구소 (가축위생시험소)</p> <p>수의과학연구소 (시·도)</p>

내 용	주관(협조)
<p>대한 잔류방지 제도 및 2차검사(규제검사) 실시 등 특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해당가축 출하농장 특별관리 실시조치 철저(대장 작성관리) · 가축 사양관리 실태점검 등 잔류원인 분석을 통한 당해 농장제도 실시 · 특별관리 대상농장의 재출하 가축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강화(2차검사 실시) : 도축전 특별관리 대상여부 확인 철저→검사 완료시까지 출고보류 등 유통제한 * 2차검사(규제검사) 실시결과 잔류물질 미검출(음성판정)시 특별관리 해제 <p>○기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·도지사는 월별 검사실적(별지 보고서식 1참조)을 다음달 10일까지 당부에 보고할 것(HPLC검사기기를 활용한 검사결과 포함) - 시·도지사는 '95 잔류물질검사사업 특별관리 실적(별지 보고서식 2참조)을 '96.1.30일까지 당부에 보고할 것. - 시·도지사는 양축농가의 피해예방을 위해 유해잔류물질 방지대책 지도·홍보 등을 적극 실시토록 할 것. - 잔류물질 검사결과에 대한 불신 및 민원야기 방지철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검사요원에 대한 기술교육 수시실시 등 검사능력 배양 및 숙련도 제고방안 지속 강구·추진 · 검사성적의 기록유지 등 동사업 실시와 관련된 대장의 작성 및 관리 철저 · 검사실시에 필요한 재료비 및 장비의 확보·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. 	<p>시·도 (가축위생시험소)</p> <p>수의과학연구소 (가축위생시험소)</p>

5. 기타 참고사항

- 사업안내기관
- 중앙 :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(02-503-7285, 500-2677)
- 시·도 : 농림수산국 축산과, 가축위생시험소

가축방역사업(공공계획)

1. 목적

- 가축전염병의 발생·만연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
- 가축혈청검사사업 강화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사전예방
- 우수동물용예방약의 생산·공급으로 전염병발생 방지
- 인수공통전염병·기생충병 등의 예방으로 국민보건향상

2. 추진방향

- 만성·경제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발생억제정책 추진
- 가축전염병의 혈청검사 및 검진·도태사업 확대
- 국가방역체제에서 자율방역체제로 점차 유도
- 예방주사사업은 점차 축소하고 혈청검사사업 강화
- 인수공통전염병 및 종식단계전염병에 대한 사업 확대 실시
- 가축위생시험소의 기능활성화 방안 추진
- 방역요원에 대한 의식전환, 사명감 고취로 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
- 년차별 시도시험소 기술인력 양성과 정밀

검사장비 확보

- 해외 선진국의 가축위생분야 견학 확대 추진
- 가축위생검사와 가축방역사업의 연계추진
- 도축장, 도계장 출하가축의 혈청검사에 의한 가축질병의 추적조사로 양성축 출하농장에 대한 신속한 방역조치
- 관내 종돈장·종계장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
- 가축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예찰업무강화로 선진방역 대책 강구
- 가축질병예찰업무의 활성화 강력 추진
- 관내 공수의의 적극 활용으로 예찰업무의 활성화 추진
- 가축전염병 예방약 개발보급 및 품질향상으로 가축방역 효과 거양
- 동물약품제조업의 약사감시 및 품질관리 강화

축산분뇨 처리시설 (공공계획)

1. 목적

- 가축분뇨의 방류방지로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
- 축산공해방지시설 자금 지원으로 축산경영비 절감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활용도모

2. 추진방향

가. 사업추진의 기본방향

- (1) 가축분뇨의 자원화(퇴비·액비) 처리 중점 지원
- (2) 축산경쟁력이 없고 축산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부업규모의 영세농가에 대하여는

간이정화시설 등의 지원물량을 점차 축소하는 반면, 농림수산부 및 환경처에서 설치하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에서 처리토록 유도

나. 사업목표 및 장기계획

(1) 사업목표

- '95까지 : 신고대상(전업규모) 농가의 정화시설 설치 완료
- '96이후 : 규제미만(부업규모) 농가의 간이정화시설 설치 및 신고대상농가의 시설 개보수·신규축산시설에 대한 정화시설비 지원

(2) 장기계획

(단위 : 개소, 백만원)

	'95		'96		'97		계	
	물량	금액	물량	금액	물량	금액	물량	금액
농특보조		531		425		390		1,346
농특용자		564		499		459		1,522
계	10,681	1,095	8,400	924	7,361	849	26,442	2,868

3. 사업신청 자격

가. 신청자격

(1) 개별 농가시설

- 간이정화시설 : 법 규제 미만 농가
- 정화시설 : 신고대상 농가(시설 개보수 농가 포함)
- 비료화시설, 퇴비처리장비 : 신고·허가대상 농가

- ※ 신고대상 : 소사육시설 350~900m³ 미만, 돼지사육시설 250~1000m³ 미만, 닭사육시설 500m³ 이상
- 허가대상 : 신고대상 이상
- 규제미만 : 소사육시설 120~350m³ 미만, 돼지사육시설 70~250m³ 미만, 닭사육시설 150~500m³ 미만

※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과거 신고대상에서 허가 대상으로 전환되는 농가에 대하여도 정화시설비 지원 허용

(2) 단체 공동시설

○ 지역축협, 축산단지, 계열주체, 영농조합법인 등 협업체 및 정착촌

나. 우선순위

(1) 개별농가시설

- 상수보호구역내 농가
- 자원화(퇴비·액비)시설 설치농가
- 축산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농가

(2) 단체공동시설

- 축산단지를 기 조성하였거나 시설부지를 확보한 단체
- 경영구조가 양호한 단체
- 공동시설설치와 관련 농지전용, 비료제조업허가, 액비살포지 확보 등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 단체

※ 축분발효시설의 경우 톱밥을 사용하지 않는 발효공법 설치 단체 우선

다. 사업 최종선정권자

- (1) 개별농가시설 : 시장, 군수
- (2) 단체공동시설 : 장관

4.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

가. 사업시행주체

- (1) 농가개별사업(지방사업) : 시장, 군수
- (2) 단체공동사업(중앙사업) : 시도지사

나. 사업내용

- (1) 농가 개별사업

○ (간이)정화시설 : 저장액비화, 퇴비사, 톱밥발효촉사, 톱밥토양여과상, KDST 등 정화효율이 높은 정화조

○ 비료화시설 : 통풍식·교반식·건조식 축분발효시설 및 화력건조시설 등

○ 퇴비처리장비 : 고액분리기, 스키드로드, 소형톱밥제조기, 분뇨건조기, 왕겨분쇄기 등

(2) 단체 공동사업

○ 축분발효시설 : 가축분뇨를 이용한 부산물 비료제조업 시설 및 장비

○ 분뇨공동저장탱크 : 가축분뇨 공동저장시설 설치비

○ 분뇨운반장비 : 바큇카, 살포차량, 교반기 등

○ 정착촌 구조개선 : 축분발효시설, 공동저장탱크, 공동퇴비사 등

다. 지원조건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개소당 사업비	지원율(%)			용자 조건	
		보조	용자	자담		
개별 시설	간이정화시설 (법규제이하)	4.2	50	50	-	3년거치 7년 균분상환
	정화시설(신고대상)	10	50	50	-	연리 3%
	비료화시설①	100	-	70	30	
	비료화시설②	50	-	70	30	
	퇴비처리장비	10	-	100	-	
공동 시설	축분발효시설	1,000	50	20	30	3년거치 7년
	분뇨운반장비	30	50	20	30	균분상환
	분뇨공동저장탱크	50	50	20	30	연리 3%
	정착촌구조개선	300	100	-	-	

양계 박람회 개최(공공계획)

1. 목적

- 닭고기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신기술 보급
- 국내외 양계관련 기자재의 비교전시를 통한 상호기술 및 정보교환
- 양계산물의 품질고급화로 양계산물의 홍보 및 소비촉진

2. 사업내용

가. 시행주체 : (사)대한양계협회

나. 시행기간 : '95. 8(격년제로 시행)

다. 사업내용

- 전시행사 : 기자재 및 시설전시, 양계사육 시설, 닭 및 양계산물(닭고기, 계란류) 등
- 홍보행사 : 양계산물, 전시판매 및 시식회, 양계산물 소비홍보포스터 공모, 우수양계인선발 대회 개최, 어린이, 주부 글짓기 대회, 다산계 심사대회, 투계시범대회
- 양계인대회, 양계관련 기술세미나 개최

라. 지원내용 : 행사비의 일부 보조

마. 지원금액 : 90백만원(축산발전기금)

3. 기타 참고사항

- 사업안내기관 :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(02-500-2674, 503-7282)

닭 능력검정 사업(공공계획)

1. 목적

- 종계자질개량 및 능력향상
- 우량종계 도입유도 및 양계농가에 계종선

택지표 제공

- 양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

2. 추진방향

- 검정요원의 전문화
- 검정방법의 공정화
- 검정결과의 공표
- 검정시설의 현대화 및 장비의 자동화

3. 사업계획

- 사업주체 : 대한양계협회
- 대 상 : 대한양계협회 능력검정소
- 사업기간 : '66~영구
- 사업량

검정소검정	일반검정
28천수(산란 16, 육용 12)	도입 및 국내분양 종계

- 사업비 : 498백만원(축산발전기금 보조)
- 지원내역
 - 사료비 : 100백만원
 - 시설 및 장비 : 398백만원(성계사, 관리사, 집수시설, 계란선별기, 발전기)

4. 세부추진요령

가. 검정요령

- 닭 능력검정요령(농림수산부 고시 제87-42호 '87. 8.21)에 의함

나. 닭 검정위원회 운영

- 검정란의 선발 및 배치
- 검정기록의 분석 평가
- 검정지도 및 개선방안 도출

다. 검정성적 공표 등

- 신계종을 수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검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거 수입여부 결정
- 검정소검정 결과는 축산관계 전문지 등에 공표
- 일반검정결과는 신청자 및 시도(시군)에 통보하여 종계장관리에 협조

라. 검정시설 현대화 및 장비 자동화

- 설계, 입찰, 정지 등 조속한 공사착수로 연내 완료
- 축협중앙회장은 사업실적 및 공정에 따라 자금지원

마. 보고 등(협회장→가축개량총괄기관장)

- '95 닭 능력검정 세부계획 보고('95. 2월 말까지)
- 사업추진실적보고(매분기 익월 20일까지)
- 대한양계협회장은 각종보고서 관련도지사에게도 보고

5. 기타 참고사항

- 사업안내 기관
 -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(전화 02-500-2674, 503-7282)
 - 국립종축원 종축관리과(0417-581-2081)
 - 대한양계협회(02-588-7651~4)

국산종계 개발지원사업 사후관리(공공계획)

1. 목적

- 국제경쟁력 있는 국산종계개발 유지

- 국산종계개발유지사업 지원자금의 효율적 관리

2. 주관 : 대한양계협회장

- 사업계획 평가를 위한 사업평가단 구성운영
- 사업계획에 의한 시설의 합리적 활용여부

3. 관리대상 : 미원 마니커 주식회사 (대표 서형교)

4. 관리기간 : 용자 실행일로 부터 10년간 ('94~2003)

5. 관리방침

- 대한양계협회장은 관리대상에 대한 추진상황을 연 2회(6월, 12월) 조사
 - 사업평가단으로 하여금 연 1회이상 추진상황 평가
 - 관리대상은 용도별(산란 1, 육용 1)로 1계종이상 국산종계 개발유지
 - 관리대상은 대한양계협회에서 실시하는 닭 경제능력검정에 개발된 계종의 실용계를 매년 출품하여 외국계종가 능력을 비교하여야 함
 - 관리대상은 자금지원 5년 이내에 개발된 국산종계가 닭경제능력검정 출품계종 평균 수익성(초생추 판매가격기준)의 90%수준이상 도달하여야 함
 - 의무사항 이행이 안될 경우 대한양계협회장은 축협중앙회에 통보하여 용자금을 회수도록 조치

6. 보고

- 대한양계협회장은 추진상황 조사결과를 익월 15일까지 가축개량총괄기관장에게 보고
 - 사업평가단 평가결과 1회 포함

7. 기타 참고사항

- 사업안내 기관
-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(전화 02-500-2674, 503-7282)
- 국립종축원 종축관리과(0417-581-2081)
- 대한양계협회(02-588-7651~4)

축산업 자조금 지원 (공공계획)

1. 목적

○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사육조절 및 소비 촉진홍보, 조사연구, 소비자 및 생산자교육 등을 통한 축산물 수급안정 도모

2. 추진방향

○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원

3.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

가. 사업시행주체 : 농림수산부

나. 사업내용

- 사업대상자 : 축산업 생산자단체(전국 관할단체)로서 축산업자조금의 조성방법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생산자 단체
- 사업비 지원

구 분	사업량	사 업 비			
		계	기금보조	지방비보조	용자 부담

	백만원		
○ 자조금 지원사업	600		400
- 돼지	300	100	200
- 닭	300	100	200

○ 지원조건 및 방법

- 농발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승인받은 자조금 사업규정에 의한 사업추진방법에 따라 '95자조금사업운영계획(안)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승인신청
- '95자조금사업운영계획을 승인받은 후 자조금사업추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성한 자조금조성액의 100분지 50범위내에서 보조금지급
- 축협중앙회는 생산자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조성액을 확인후 보조금교부 및 지급

4. 기타 참고사항

- 사업안내 기관 : 농림수산부 축산물유통과(503-7283)

닭고기 · 계란 수매 (공공계획)

1. 목적

- 양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와 시책의 원활한 수행
- 적정가격 유지로 양계농가 경영안정 및 소비자 보호
-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기능 기반구축

2. 추진방향

- 기본방향
- 자율수매비축 :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수매

비축에 의한 수급 및 가격안정

○ 사업목표

— 육계, 계란가격이 생산비 수준에서 안정유지 목표

· '93생산비 : 육계 945원/kg,
계란 523 원/10개

3.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

가. 사업시행주체 : 농림수산부

나. 사업내용

○ 사업대상자 : 생산자단체(축협, 조합), 정부지정계열화업체, 한국냉장, 가공업체 등

○ 사업비 지원

구 분	사업량	사 업 비			
		계	국 고 보 조	지방비 보 조	용 자 자 담
양계산물 수급조절사업		백만원	9,000		9,000
· 닭고기	15 억개	5,600			5,600
· 계란	3	3,400			3,400

○ 지원조건 : 용자(연리 5%, 1년거치후 일시상환)

○ 자율수매비축 방법

— 수매시기 : 양계산물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여 경영비 이하로 하락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자율적으로 수매비축 실시

— 수매기간 : 1년간

— 수매품목 : 육계, 계란

— 수매장소 : 산지농가 또는 계열농가, 도계장

— 수매가격 : 산지가격이 경영비 수준일때 자율수매비축

· 닭고기 · 계란 수매에 따른 손익은 수매주체에서 책임처리

4. 기타 참고사항

○ 사업 안내기관

— 중 앙 : 농림수산부 축산국 축산물유통과 (02-503-7283)

— 시 · 도 : 축산과(서울특별시는 농수산유통과, 직할시는 농정과)

— 시 · 군 : 축산과(산업과)

축산물작업장 지도 및 검사업무 감독 강화(공공계획)

1. 목적

○ 축산물의 위생처리 공급으로 국민보건 향상

○ 검사업무의 효율성 제고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 · 공급

2. 추진방향

○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시설 및 위생관리실태 정기점검 실시

○ 위생도계육 유통지역 확대 지정

○ 원유검사의 공정성 확보방안 강구

3. 추진내용

○ 축산물작업장 시설 및 위생관리실태 점검

— 대상업소 : 도축장 · 도계장 · 집유장(착유장 포함)

— 점검시기 : 불량축산물 유통이 우려되는 하절기를 중심으로 년2회이상 실시(필요시 농림수산부와 합동점검)

— 점검착안사항

〈작업장시설, 기구 및 작업환경 정비〉

·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적합여부

· 도축·도계작업 및 검사에 필요한 기구 확보여부 및 위생관리실태

· 작업장 주변 및 작업전후 작업실 등 청소실태

· 작업실과 폐기물처리장과 원거리 위치(해충발생방지) 여부

· 작업실내 외부인 출입제한 여부

· 작업원 건강진단 및 위생관리교육 실태

· 도축전 생체계류 및 세척여부

· 수축의 도살·해체방법 준수 여부

(검사원 근무실태)

· 계류시설 및 냉장시설에 비례한 적정 도축여부

·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24조(별표 4)의 규정에 의한 생체 및 해체 및 시설검사여부

· 불합격품의 폐기 적정여부

· 검사원의 위생복 착용여부

- 점검결과 조치: 시·도지사는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시설점검결과와 미비사항 적발시 즉각 시설보완 등 행정조치

○ 축산물작업장 허가관리지침(위생 51575-712호: '93. 7.14)에 의한 도축장·도계장·집유장의 허가관리 철저

- 영세·노후한 작업장의 통폐합 정비 유도

-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·가공

· 유통 연계추진 유도

- 작업두수에 비례한 검사원 확보 및 배치 철저

○ 위생도계육 유통지역 확대 지정

- 닭·오리에 대한 축산물위생처리법 적용 대상지역 확대 추진

닭: 전국 읍단위이상 지역을 유통지역으로 확대 추진

오리: 대량소비지역을 중심으로한 유통지역 확대 추진

- 도계육 반출 및 유통질서 확립

축산물위생처리법 규정의 도계장에 한하여 타시도 반출 허용

식육운반차량으로 도계육 운송

반출통보서 및 검사증명서 발급 철저

- 주간도계 및 자가도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계열화 유도

○ 도계·원유검사원 지도 감독 철저

- 도계 및 원유에 대한 자체검사실태 및 검사원 지도 감독 철저

- 검사수량에 비례한 자체검사원 확보

4. 기타 참고사항

○ 사업안내기관

- 중앙: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

(02-503-7285, 500-2677)

- 시·도: 농림수산국 축산과

도계장시설현대화 및 도축·도계부산물처리시설 지원(자율)

1. 목적

○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 공급으로 국민보건 향상

○ 작업장의 위생처리시설 확충으로 축산물 수급원활 및 환경위생에 기여

2. 추진방향

○ 작업장 위생시설 설치 지원으로 축산물의 수급원활 및 육류유통 구조개선

○ 도축·도계과정에서 발생하는 털, 지방, 내장 등 부산물의 적정처리로 환경위생 기여 및 부산물의 자원화 활용

○ 사업목표 및 장기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'90~'94	'95	'96	'97	계
○ 사업량	47개소	17	11	10	85
○ 사업비	47,901	15,687	4,730	4,300	72,618
- 축발기금	27,650	8,650	3,300	3,000	42,600
- 자담	20,251	7,037	1,430	1,300	30,018

* 자담비율 30% 이상

3. 사업물량 및 대상자 선정 검토서류

○ '95 시·도별 사업물량

(단위 : 개소)

사업명	계	인천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도계장시설 현대화	7	1	2	-	-	1	-	-	2	1	-
도축·도계 부산물처리시설											
- 도축개별시설	6	-	1	1	-	1	-	2	-	1	-
- 도계개별시설	3	-	1	-	1	1	-	-	-	-	-
- 도계공동시설	1	-	-	-	1	-	-	-	-	-	-

○ 대상자 선정 검토서류

- 사업계획서(자체자금 투자내역 포함)
- 작업장 대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
- 최근 2년간 월별 도축·도계실적
- 도축·도계부산물 발생량 및 처리실태

4.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

- 사업시행주체 : 시장·군수
- 사업대상자 : 도계시설(가공·비축시설 포함) 개선 및 도축·도계부산물 처리설비를 하고자 하는 도축·도계장 경영자
- '95사업내용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명	물량	지원단가	사업비		
			계	축발기금	자담
도계장시설현대화	(개소) 7	700	9,712	4,550	5,162

도축·도계부산물 처리시설					
- 개별시설	9	300	3,875	2,700	1,175
- 공동시설	1	1,400	2,100	1,400	700
계	17		15,687	8,650	7,037

○ 지원조건 :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, 연리8%

5. 기타 참고사항

- 사업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: 목적, 사업내용, 경제성분석, 소요예산, 사업효과 등
- 사업신청 : 해당 시장·군수에게 사업신청
- 시·군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한 42조 투융자계획분 우선반영
- 사업안내기관
 - 중앙 :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(02-503-7285, 500-2677)
 - 시·도 : 농림수산국 축산과

전업농육성사업(자율)

1. 목적

-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이끌어갈 전문화·규모화·현대화된 경영체 확보
- 도시가구와 소득균형을 이루며, 일정수준의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·공급할 가족단위의 전업경영체 육성

2. 추진방향

가. 기본방향

- 향후 10년간 매년 15천호씩 2004년까지 총 15만호의 가족전업농 육성
- 쌀전업농 10만호, 축산전업농 3만호, 원예·특작·어업전업농 2만호

○ 전업농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생산·유통 지원사업자금, 농기계구입자금 등 각종 정책사업자금을 우선 지원(품목별 소관부서)

나. 장기계획

	'95	'96	'97	'98	'99~2004	계
호						
육성목표	15,000	15,000	15,000	15,000	90,000	150,000
-축산	3,000	3,000	3,000	3,000	18,000	30,000

※ 축산전업농은 축종별(한우·젓소·돼지·닭)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육성·지원

3. 사업신청 자격

가. 각 품목에 공통된 자격요건

○ 전업농이 되고자 신청한 품목을 주된 작목으로 하며, 최근 3년 이상 그 품목을 계속하여 경영하고 있는 농어가

○ 경영주가 55세 이하인 농어가, 또는 경영주가 56세 이상인 경우 그 영농어기반을 승계할 동거가족(영농어 승계자)이 있는 농어가

※ 영농어승계자는 최근 1년이상 경영주가 동거하며 영농어에 종사한 자만 인정

○ 경영주가 농업 또는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어가

※ 농한기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전업으로 인정

○ 가족노동력으로 일상적인 농작업을 수행하며, 전업농 규모에 필요한 기계 및 시설의 조작성과 기초적인 정비 능력이 있는 농어가

선도농어가 지원 (공공계획)

1. 목적

○ 생산기술, 경영기법, 기계 및 시설, 생산규모, 소득 등의 면에서 가장 앞서가는 전업농을 「선도농어가」로 지정하여 이들을 일반 농어가가 국제경쟁력 있는 농어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모델로 활용

2. 추진방향

가. 기본방향

○ 「선도농어가」가 농어업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의 선봉이 될 수 있도록 각종 농수산 정책사업을 우선 지원

○ 농촌진흥청 및 수산청과 그 산하 농어촌지도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농어민교육을 「선도농어가」 주도의 실질적 현장교육 위주로 전환

나. 장기 계획

	'95 ~ '98					'99~	합계
	'95	'96	'97	'98	소계	2004	
축산	7	11	11	11	40	66	106

※ 세부 품목별 지정 농가수는 분야별 대상자 심사과정에서 결정

3. 사업신청자격

○ 당해분야 영농(어)경력이 5년 이상이고, 경영규모, 기계·시설,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 등에 있어 다른 농어가의 모델이 되는 농어가

○ 경영주가 전문기술 및 경영기법을 일반농어가에 전파하려는 의욕이 있고, 실질적인 교육능력이 있는 자

(품목별 대상자 선정기준 및 추천기관)

품목	선정 기준	추천 기준
닭	3만수 이상, 사료급여·급수, 환경제어, 집란 및 계분처리 자동화	시·도, 양계협회, 축협 등